

## 서비스업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제도 도입

- 「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」 개정 시행 -

□ 지식경제부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제도 도입 등과 관련하여 「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」을 개정 완료(10.5일 관보게재) 하고 10.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

•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제도 :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높은 지가, 복잡한 절차 등으로 대표적인 애로사항인 입지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

○ 이는 서비스업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 개정안이 금년 4.5일 공포됨에 따라, 그 후속조치로 개정된 것임

□ 이번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

### ①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제도 도입

- 지금까지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제도는 제조업 공장부지 위주로 운영
- 이번 개정을 통해 고용창출, 내수진작 등에 있어서 파급효과가 큰 지식서비스·금융·문화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에 대해서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입지 확보와 임대 지원 등이 가능

• 대상 업종 규정 : 개정 시행령 제25조제3항

1. 「통계법」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
2. 「산업발전법 시행령」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
3.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에 따른 산업지원서비스업
4. 「문화산업진흥기본법」에 따른 문화산업
5.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관광사업(카지노업은 제외)

○ 또한, 서비스업의 경우 수요자와 인접한 도심지 등에 사업장이 위치하는 특성을 감안하여 도심지내 건물 일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, 국내 기업과 외투기업과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전체 외투지역의 50%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내 기업도 일부 입주가 가능

### ② 외국인투자기업이 이익준비금을 자본으로 전입할 시 외국인투자자로 인정

○ 지금까지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이익잉여금을 외국투자가에게 주식배당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자로 인정되었으나, 주식배당과 경제적 실질이 같은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은 인정되지 않고 있어 이익 재투자에 대한 동기부여가 미흡하였음

• 「상법」 제458조에 따른 이익준비금을 같은 법 제461조에 따라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, 법적 절차는 다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익잉여금의 주식배당과 같은 효과(세법에서도 주식배당으로 간주하여 동일한 세율 부과)

○ 외국인투자기업이 이익잉여금을 준비금으로 적립(이익준비금)한 후 자본으로 전입하여 외국투자가가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외국인투자자로 인정하여, 기업의 이익 발생분에 대해 해외 송금 대신 국내에 재투자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한편, 외국인투자 인정기준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함

• OECD의 외국인직접투자(FDI) 기준에도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은 FDI로 인정

③ 외국인투자 신고대상 최소금액 조정

- '98년 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이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외국인투자로 신고해야 하는 최소 투자금액은 5천만원으로 규정
- 하지만, 그동안의 국내외 경제물가수준이나 투자의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비현실적으로 낮아 이를 1억원으로 조정

□ 아울러, 4.5일 개정·공포된 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도 이날 시행을 하게 됨

-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국공유지 수의계약 대상 확대, 현금지원 요건 완화 등과 같이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개선과 유치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본격적으로 시행

<참고> 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(10.4.5, 개정·공포) 주요 개정내용

구분	주요 개정내용
지자체별 촉진계획 수립 (법 제4조의2)	○ 소관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 활동 촉진을 위해 관계부처·지자체별 소관 업무와 관련된 외국인투자 촉진 계획 수립 및 실적 제출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
국공유지 수의계약 등 대상 확대 (법 제13조)	○ 「도시개발법」, 「물류시설법」 등 개별법에 따라 조성된 국공유지도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수의계약으로 임대·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, 임대기간과 임대료도 완화될 수 있도록 개정
현금지원 대상 확대 (법 제14조의2)	○ 투자액 1천만원 이상의 요건 삭제(12년까지 한시 적용) 및 연구시설 고용규모 10명 이상을 5명 이상으로 완화하여 소규모 투자인 경우도 국내 기술파급효과 등이 큰 경우에는 현금 지원이 가능 · 고도기술, 산업지원서비스, 부품소재기업, 고용창출 등 효과시 지원
옴부즈만 기능 강화 (법 제15조의2)	○ 행정기관에 대해 현행 자료제출 요청권 외에 의견제출·현장방문 협조 요청·관련 사항 개선 권고 등도 가능하도록 하여 외국인투자 애로 해소 활동을 강화
외투자지역 지정범위 확대 (법 제18조제1항)	○ 고부가가치 서비스업(연구개발 포함)을 수행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 촉진을 위해 서비스업 외국인투자지역 지정